

排出賦課金制度

鄭國鉉

〈環境廳振興協力課長〉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배출부과금 제도의 실시배경, 부과대상 오염물질, 부과금 산정 방법 및 기준, 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부과금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질의 회신내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염물질별 부과금 산정을 예시한 후 끝을 맺고자 한다.

【문】환경오염도 검사(단속)를 실시할 때 배출업소에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에 초과함을 미리 알고 임의로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여 시·도에서 개선명령을 명하기 전에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부과금 징수 조치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개선명령을 명하는 즉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완료 신고를 하면서 개선완료 되었음을 주장할 시 부과금 산정일 수 및 이러한 개선완료 신고를 적합한 신고로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여부?

【답】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즉시 개선명령일과 동일한 날에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배출부과금 산정일 수는 없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자가 개선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일과 개선계획서 제출일 간에 며칠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배출부과금 산정일 수로 계산하여야 됨.

【문】위와 같은 경우 시험성적서(폐수항목의 경우)가 발부되려면 검사소요일 7일과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에 3일이 소요됨을 가정하면 최소한 10일 정도는 부과금 산정에서 제외(현행법

및 사무처리 규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이 기간은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고 있으므로 부과금 산정에 포함시킴이 옳다고 보여지며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산일을 채수일로 개정할 수 없는지 여부?

【답】환경보전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동법 제17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경우”에 배출부과금 납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오염물질 채취 및 오염도 검사기간 동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은 할 수 없으며, 기산일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추후 환경보전법 개정시 참고할 것임.

【문】현행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배출허용 기준을 300%와 400%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업소는 부과계수란에 “조업정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역내의 여러가지 여건(고용, 생산 등 2차문제를 고려)상 조업정지를 유보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가 300% 이상 또는 400%가 되어 조업정지시킬 경우 국가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특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생산 등 2차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유보하여서는 아니됨.

〈다음호에 계속〉